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위치 : 문화관 2층 (73동 223호)

전화 : 02-880-8055

E-mail : helpyou@snu.ac.kr

Homepage : <http://help.snu.ac.kr>

함께 가는 성,
더불어 사는 세상

대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 지침서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목 차

1 성에 관한 프롤로그	2
성, 그것은 우리들의 '차이'와 '관계' / 서로 다른 나, 너, 우리의 성 / 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 더불어 산다는 것은... / 성평등 장애를 경주	
2 평등한 관계, 자율적인 성	8
차이 속의 평등 / 성적 의사소통 / 나에게 묻는 나	
3 대학생활과 캠퍼스의 성문화	12
평등한 관계의 장애물 /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4 성적 자율권과 성폭력	16
성적 자율권이란? / 성폭력이란?	
5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18
성희롱의 정의 / 성희롱의 유형 /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 성희롱의 예 / 대학내 성희롱의 실태 / 대학내 성희롱 방지의 법적 근거 / 성희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이해	
6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26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세와 에티켓 /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니다	
7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안내 및 이용 방법	30
상담소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상담소 이용 방법 및 절차 /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 / 상담소의 위치와 연락처	
8 또 다른 프롤로그를 위하여	35

[부록 1]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부록 2] 성폭력 피해자 응급정보 키트

1 성에 관한 프롤로그

성(性)!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떠오르나요?



성(性)! 나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성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그려 보기로 해요.



참! 연상되는 단어들도 있겠군요.



성, 그것은 우리들의 '차이'와 '관계'

호기심, 설렘, 즐거움, 또는 두려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의 표정을 이끌어내는 성. 우리가 흔히 쓰는 '성'이란 말의 의미는 복합적입니다.

- 성이라고 하면 우선 '섹시하다'는 말이 함축하는 모든 것, 성관계, 사랑, 연애 같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 잠깐! 그 뿐이 아니지요? 성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신체의 차이라든가
- 사회가 기대하는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성별의 차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과 관련된 우리들 각자의 체험과 상상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그 의미는 남녀의 '관계' 그리고 '차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관계를 나타내고 이 관계에 얽힌 다양한 색깔의 욕구와 감정까지 표현하다니, 성은 참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나, 너, 우리의 성

여성과 남성은 똑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의 차이는 개인을 특징짓는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차이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더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원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 차이로 인하여 차별과 배제, 권력의 불균형,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 점철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는 서로 다른 나, 너, 우리의 성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과연 이 차이와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이제부터 나누고자 하는 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차이와 관계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성적인 기능과 연관된 우리 몸의 구조와 생리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몸은 개인의 '나다움'을 특징짓는 자아 정체성의 정박지이고, 인격과 권리의 지표가 되는 물리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체성이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성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무조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은밀하게 가려두어야 한다고 보는 태도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욕망과 구체적인 욕구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에서 비롯되며, 성에 대한 건강한 관심은 자아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성의 이해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가능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사와 욕구를 이해할 때에만, 진정 누군가와 '더불어' 산다고 할 수 있지요. 성을 통해 남을 만나는 것 역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평등 장애물 경주

Start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자연스러운 거 아냐?

YES

성관계에서
여자가 적극적인 건
좋 이상해.

YES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아닌걸

YES

조심하세요. 당신은 차별과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 책을 꼼꼼
히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
니다.

NO

음...
성이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색하고 부끄러워.

YES

수업이나 놀이 중의
가벼운 성적 농담은
분위기를 띄워 줘.

YES

피임은
여자가 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하다고 생각해.

YES

자신의 욕구에 대해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
다. 그러나, 당신의 욕구가
타인의 욕구와 조화를 이룰
때, 평등하고 즐거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
억하세요.

NO

NO

NO

[나는 성(性)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데이트에서 소진함을
하기 전에
관찰은지 물어보는 건
이상해.
그런 건 본위기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YES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거야.

YES

성적 접촉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확실하게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동의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

YES

평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약간 부족합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혹은
알아차리지 못한 차별과 폭
력이 당신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NO

NO

NO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건
말도 안 돼.

YES

성폭력은
소수의 이상한
정신병자들이나
저지르는 짓이야.

YES

지금의 우리 사회는
남녀평등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YES

파트너와 평등한 관계를 형
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제에
도 관심을 기울이면 더욱 좋
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
니다.

NO

NO

NO

NO

성에 대하여 자유롭고 평
등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
다. 당신의 관점을 유지
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
랍니다.

성에 대하여 자유롭고 평
등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
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역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성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에 대한 자신
의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평등한 관계, 자율적인 성

차이 속의 평등

인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생김새나 사고가 동일하지 않듯이,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평등에 관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환원되지 않고 동일한 논금의 잣대로 측정할 수 없는, 수많은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차이들을 없애면, 평등이 이뤄질까요? 아니, 평등이 이뤄지면, 우리들의 차이가 사라질까요? 똑같지 않으면 평등하게 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등은 동일성이 아니며, 평등과 대립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특권과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인종, 민족, 지역, 성에 따른 차별은 어느 한 집단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모든 차이들을 서열화하는 지배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평등은 서로 다른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의사소통

사랑, 연애, 성적인 만남에서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나름대로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비용, 꽃바구니, 커플링, 피임 기구 등을 떠올리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말이건 몸짓이건 의사소통이 없는 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관계의 모습은 아주 달라질 수 있지요. 타인과의 대화는 자기와의 대화에 의존합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은 나의 존재와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뜻합니다.





그림: 선경

나에게 묻는 나

- 나는 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내 몸의 생김새나 성적 기능을 지나치게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나는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가 갖든 나의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긍정하고 있는지...
-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듯이, 상대방 역시 자기가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 나는 내 기분과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표현들은 상대방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 나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지...
- 나는 상대방의 의사를 알기 위해 직접 물어보는지, 아니면 지레짐작으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편인지...
- 내 행동의 결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자주 있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3 대학생활과 캠퍼스의 성문화

캠퍼스의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는 대학생들에게 사랑, 연애, 그리고 성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캠퍼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문화의 풍경도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은 "단 한 번의 운명적인 사랑으로 결혼에 이르러 영원한 행복을 기약하는" 로맨스의 환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을 조금 더 개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일상생활의 화제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역시 다른 삶의 현장들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이나 폭력적인 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성을 통해 자유롭게 평등하게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의 장애물

성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고정된 사고는 우리가 만남의 과정을 통해 탐색하고 발견해야 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편견을 낳는 성에 대한 정형화된 사고를 성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성차별

성고정관념은 성차별을 유발합니다. 성차별이란 특정한 성에 속한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는 권리 행사를 제약하거나 배제하는 것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을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폭력적인 성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

A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입생 M.T를 갔다. M.T 장소에 도착하여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 남학생들이 "이런 건 여자들이 잘 하니까 너희들이 좀 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캠프파이어 준비를 하겠다고 제안한다.

...if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B가 과방에 앉아 있는데, A가 지켜 보이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B는 A의 기분을 좋게 해 주자는 생각에, 치마를 입고 있는 A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오~다리 죽어는데!"라고 칭찬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A는 B에게 벌칙 화를 내고 과방에서 나가버렸다.

...if

당신이 A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B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셋

A는 컴퓨터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를 켜니 바탕 화면에 반라의 다리를 벌린 여성의 사진이 깔려 있었다. 누군가가 포르노 사이트 같은 곳에서 받아서 깔아놓은 듯했다. A는 몹시 당황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지만, 누가 볼까 두려워 얼른 지워버렸다.

...if

당신이 A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라면...?]

넷

A는 과 중강 모임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옆에 앉은 B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시키더니 온근술쩍 손을 어깨에 얹고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야기를 했다. A는 몹시 불편하고 짜증스러웠으나 술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 다음 날 A는 B에게 전날의 일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B는 "그 때는 아무렇지 않게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불쾌했다는 게 말이 되나"면서 옆에 있는 C에게 의견을 묻는다.

...if

당신이 C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섯

A가 듣는 강의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다. 하루는 강의와 관련하여 슬라이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수업을 진행하던 B교수가 "저 여자는 몸매가 괜찮네", "저런 여자랑 데이트 한번 해 보면 소원이 없겠죠?", "여기 수업 듣는 여학생들도 공부만 하지 말고 좀 가꿔요. 여자는 모름지기 미모야 미모!" 등의 말을 했고, 그 때마다 강의실에서는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A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수업 중에 하신 지나친 농담이 불쾌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B교수님은 "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지루할 것 같아서 농담을 좀 한 것 뿐이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좋아하면서 웃는데, 학생만 문제를 느끼는 건 과민 반응이 아니냐"고 되묻는 답장을 보냈다.

...if

당신은 A의 행동과 B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적 자율권이란?

개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입맛이 다른 것처럼 사랑과 성애의 감정은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요.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성에 관한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와 결정의 자율성은 그 행위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자신의 성적 욕구와 취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유롭게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선택의 자유와 결정의 기회가 제약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성적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이란 이처럼 개인의 성적 자율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요.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는 행위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에는 동의의 수준 역시 문제가 되는데, 가령 데이트에 동의했다고 해서 강제적인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성폭력은 성별의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말한 성폭력은 물론 아내 구타와 같은 가정폭력, 중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성노예제, 성매매 등 성별의 차이와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여성 폭력 전반이 포함되지요.



5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미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성차)에 근거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래스먼트(harassment)는 단순한 '희롱'이라기보다 성가심, 불안, 걱정을 끼치는 괴롭힘에 가까운 말입니다.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종류와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 고용, 업무, 교육 등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조건형(quid pro quo) 성희롱 : 모종의 '이익'을 암시하며 성적인 요구를 한다든가(대가형),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줌으로써(보복형), 고용, 업무, 학업 평가의 조건으로 삼는 것.

■ 적대적 환경형(hostile work environment) 성희롱 : 어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고용, 업무,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직장, 공공단체,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및 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라면,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요구는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예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 안마나 예우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 어둡거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추행이나 강간 행위



대학내 성희롱의 실태

지난 2002년에 여성부가 전국 20개 대학의 남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내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부와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39.2%가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의 발생 빈도는 여자대학(9.9%)보다 남녀공학(39.9%)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데, 성희롱을 경험한 여학생들의 대다수(대학원생 58.1%, 학부생 49.5%)가 "불쾌하지만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성희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학생에 따른
성희롱 발생 장소(중복응답)

장소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	출장지, MT장소	사무실, 과사무실	강의실, 도서관 등	동아리방	기타 교내	교수 연구실 등
대학원생	47.1	21.5	19.8	16.3	10.5	12.8	16.3
학부생	45.5	31.5	5.4	22.1	16.2	12.6	4.1

성희롱 피해 여학생과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	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무응답	전체
대학원생	22.1	8.7	36.6	30.8	1.7	100.0
학부생	7.2	1.8	5.0	78.8	7.2	100.0

(자료: 여성부, 2002년 대학내 성희롱 실태 조사)

대학내 성희롱 방지의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성희롱을 '남녀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공공단체의 성희롱 방지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성희롱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 2조 2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 2조 ①항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희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이해

성희롱은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에 불과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존감의 훼손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사제시간, 선후배, 동료 학우들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은 존경과 신뢰감을 파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위축과 사회활동의 저하, 학업 성취의 부진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그냥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 회피, 무시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피해자가 받은 영향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입니다.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는 일차적인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적 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의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일만 성희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회식 자리, 실습 여행, M.T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며 교육, 업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남성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약 5-10%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마땅하다?

성희롱을 개인들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희롱은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집단적 현상으로, 여성을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차별적인 성문화가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대처에 협조하며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누구나 성희롱과 성폭력을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모든 사람에게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조사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과연 성희롱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며, 특히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는 매우 큼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저지르겠다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성문화 속에서 습관화된 성적 언행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성희롱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작은 실천입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세와 에티켓

- ◆ 함께 활동하는 학우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다.
- ◆ 다른 학우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성역할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대상화하지 말아야 한다.
- ◆ 평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 상대방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결과를 존중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침묵을 긍정과 동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 자신의 성적 언행에 대하여 다른 학우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 불쾌한 성적 언행에 대한 나의 불분명한 대응이 상대방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불쾌한 감정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한다.
- ◆ 상대방이 무안해질 것 같아서, 또는 관계가 꼬여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나 배려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제의 행동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니다

대부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가해자의 사과, 그리고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나, 너, 우리의 관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왜곡을 피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가급적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성희롱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가해자와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의 행동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술하고, 이 행동이 본인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항의 편지는 가급적 사본을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우체국에서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등기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한다.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록의 내용은 성희롱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교내 상담소(구내 8055)와 접촉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식적인 해결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면, 사건을 신고하여 학교의 규정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합니다.

▶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다.**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의 연락처는 [부록 2] 성폭력 피해자 응급정보 키트를 참조하세요.)

가해자가 되었을 때



흔히 성희롱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적 언행에서 얻는 쾌감과 무례한 언행이 치러야 하는 대가 사이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곡예를 펼치지만, 정작 성희롱의 가해자로 드러나게 되면 본인 자신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때늦은 후회가 가해 사실을 되돌리거나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취하는 태도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생존자'로 거듭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가해자 자신을 더욱 추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 습관과 문제의 원인을 성찰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 지침서

에 실린 <가해자를 위한 지침>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거리를 두고 생존자의 요구를 존중하라. 생존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만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 생존자의 분노를 존중하라. 그녀는 당신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분노가 필요하다. 그녀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 어떠한 변명을 하기보다 미안하다고 말하라. 변명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당신이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 다시는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것은 생존자 뿐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 생존자가 당신을 용서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어떤 용서가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용서해야만 할 것이다.

(엘렌 베스·로라 데이비스 저, 「아주 특별한 용기」 중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제 3자로서



학과, 동아리의 선후배나 동료들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이 해당 집단 내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 방식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성희롱을 알게 된 제 3자가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사건의 은폐에 동조하거나 가해자의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축하는 냉소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한 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인은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말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 줌으로써 우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의논하며,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안내 및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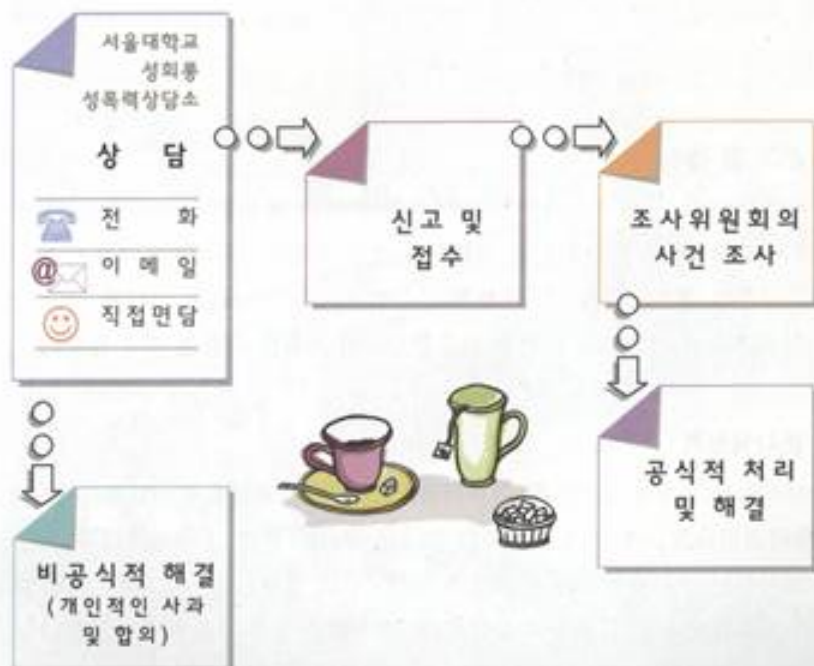
상담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 학습,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2월 22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조사·처리합니다.
- 상호존중의 평등한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연회, 문화행사 등을 실시합니다.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서와 자료를 발간합니다.



상담소 이용 방법 및 절차



1) 상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혹감과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를 얻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기도 곤란하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피해자는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상담소에 찾아와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상담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차,
을
심
래

차,
을
심
래

차,
을
심
래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위 치 문화관 2층 (73동 223호)
 :: 전 화 02-880-8055
 :: E-mail helpyou@snu.ac.kr
 :: Homepage http://help.snu.ac.kr



문화관 건물 자세히 보기



찾아오시는 길



8 또 다른 프롤로그를 위하여

기: 난 말이야...성에 대해 궁금한 건 많았는데 막상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 좀 부끄러웠어. 개가 날 이상한 애로 보면 어쩌나 해서. **나:** 히히...나도 그랬어. 근데 알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거 있지? **기:** 응...글쎄, 요즘은 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지 않나? 어...근데 또 생각해 보면 막상 내가 정말 당당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더라구. **나:** 에이...성이란 건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고 편하게 즐기는 게 최고 아니겠어? 지식 같은 거 없어도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기:** 조심해...너 같은 무대보들이 꼭 사고를 치더라? **나:** 앗! 너 또 성폭력 얘기 하려는 거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겠어. 그 말! 이제 다 뉘우겠다~ **기:** 아니야. 나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번에 어떤 일로 많이 반성했어. 내 느낌만 믿고 행동하다가 친구한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거든. **나:** 중요한 건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아. 나한테 그런 상처를 입히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던 애를 생각하면...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해. **기:** 성도 성 나름이야. 맞지? 아무튼 난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 자, 그럼 이제 끝났지? 밥 먹으러 가자! **기:** 헛...근데 어떡하지? 끝난 건 아무것도 없어.

또 다른 시적이 있을 뿐...



[부록 1]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6.30 규칙 제1156호

개정 2002.1.7 규칙 제122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설치령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성희롱·성폭력상담소)

① 서울대학교 총장은 성희롱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처리를 담당하는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상담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및 상담소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③ 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2.1.7>

제6조 (소장)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담소장 및 상담소 부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5인 이내의 학생대표와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5인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성희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 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5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담소 부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의 조사의뢰가 있을 때 부소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③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신고)

-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와 상담)

- ① 소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신고가 접수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 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소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 ① 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발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소장은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제1156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사건중 미해결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부 칙(제12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성폭력 피해자 응급 정보 키트

긴급전화



여성긴급전화	1366
폭력 및 범죄 상담	112
여형사기동대	02-738-8080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국립경찰병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
	02-3400-1114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6동 142-75 중앙빌딩 3층
	02-865-41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 강동구 둔촌2동 6-2
서울보훈병원	02-2225-111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02-950-1114
박금자 산부인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3-3
	02-846-1503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분당차병원	031-780-5000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가톨릭의대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02-590-1362
최차혜 산부인과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20
	02-463-2311
이근덕 신경정신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5
	02-419-0152
소은희 신경정신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252-10
	02-3463-3505
남강한의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36
	02-719-4231
함춘여성클리닉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600-10
	02-522-0123

성폭력 상담 기관 및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http://www.sisters.or.kr 02-338-2890
서울 여성의전화	서울 중구 신당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http://hotline.jinbo.net 02-2272-2161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http://tc.womenlink.or.kr 02-739-8858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13번지 101호	http://www.iffeminist.or.kr 02-953-1504
사이버인권침해 방지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6	http://www.gender.or.kr 02-3415-0114
기독교 여성상담소	서울 중구 경충동1가 38-64	http://www.8275.org 02-2285-4275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서울 강동구 명일2동 47-1 세종프라자 705호	http://www.was.or.kr 02-3013-1367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	http://www.moge.go.kr 02-2106-5000
여성법률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http://www.womenlaw.co.kr 02-584-4003
여성법률상담소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4-8 우민빌딩 6층 601호	http://www.homelaw.co.kr 02-587-3233

발행일: 2003. 2.

발행인: 김은경

발행처: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편집기획위원: 김은경, 모경환, 신상숙

집필·편집: 신상숙, 안희은정, 이김보영

그림: 장정예

편집디자인: 장꽃님

표지: 최선경

제작: 한울기획(Tel: 877-0815)